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9098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09.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1.09.]

www.jokbalsuper.com
가맹문의:1877-2333

족발슈퍼

정 보 공 개 서

제이케이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제이케이컴퍼니

주의사항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케이컴퍼니(JK Company)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5, 507호(비전동, 강일타운)

Tel : 031-652-1877 / Fax : 031-657-1877

본사 영업관리 Tel : 1877 - 2333 / e-mail : jokbalsuper@naver.com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 검토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3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5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1

별첨1.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별첨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제이케이 컴퍼니	족발슈퍼 외 3개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5, 507호(비전동, 강일타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9.01.29	김윤영	1877-2333	031-657-1877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530-30-0076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배우자	정명섭 / 이지에프코리아 (EGFCOREA)	덮밥슈퍼 외 5개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5, 507호(비전동, 강일타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명섭	1877-6373	031-657-1877
			사업자등록번호	265-23-0103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 분	상호/영업표지	양도일	주소	대표자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족발슈퍼】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영업표지 설명
명 칭	족발슈퍼	오븐에 구운 바베큐 족발 브랜드
상 호	족발슈퍼 ○○점	가맹점의 상호명(점포명)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표(서비스표)		○ 상품분류 : 43류 ○ 등록일자 : 2021.04.19 ○ 등록번호 : 4017176370000
		○ 상품분류 : 43류 ○ 등록일자 : 2021.04.19 ○ 등록번호 : 4017176380000
		○ 상품분류 : 43류 ○ 등록일자 : 2021.04.19 ○ 등록번호 : 4017176390000

-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326,987	-	-
2022년	214,200	141,284	72,916	351,907	39,053	39,101
2023년	238,093	189,549	48,543	232,656	-14,206	24,372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최근3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윤영	대표	2019.01.29.~현재	대표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사업명(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당사	제이케이컴퍼니	족발슈퍼(20210441)	2019.06~현재	족발 전문점
		닭발슈퍼(20211807)	2024년 예정	닭발 전문점
		치킨슈퍼(20210983)	2024년 예정	치킨 전문점
		잇빠잇토픽(20210441)	2022.05~현재	피자 전문점
배우자	정명섭/이지에프코리아(EGFCOREA)	덮밥슈퍼(20191261)	2020.12~현재	덮밥 전문점
		국밥슈퍼(20211876)	2023년 예정	국밥 전문점
		소곰커피(20211878)	2023년 예정	커피 전문점
		할죽슈퍼(20213535)	2022.01~현재	죽 전문점
		까뿌족(20211877)	2022.03~현재	족발 전문점
		PF족발(20214468)	2024년 예정	족발 전문점

* 상기 잇빠잇토픽은 2024년 5월, 할피족으로부터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PF족발은 2024년 4월, 이지예프코리아(EGFCOREA)가 (주)피에프컴퍼니로부터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영업표지)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품분류	소유자	등록여부/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영업표지 □ 「상표법」 상 서비스표	2021.04.19	4017176370000 (43류)	김윤영	등록
					2031.04.19
	□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영업표지 □ 「상표법」 상 서비스표	2021.04.19	4017176380000 (43류)	김윤영	등록
					2031.04.19
	□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영업표지 □ 「상표법」 상 서비스표	2021.04.19	4017176380000 (43류)	김윤영	등록
					2031.04.19

- 귀하는 영업표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수정 및 제작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맹계약 의무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영업표지는 등록된 상표로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습니다.
-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당사의 영업표지 내용은 특허청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족발슈퍼]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9년 6월 11일
(상기일자는 제1호 가맹계약일입니다.)

2 [족발슈퍼]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이케이컴퍼니	족발슈퍼	김운영	2019.06 ~ 현재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5, 503호 (비전동, 강일타운)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5, 507호 (비전동, 강일타운)

3 [족발슈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족발슈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족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족발슈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2	52	-	39	39	-	26	26	-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3	3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1	11	-	6	6	-	3	3	-
강원	7	7	-	7	7	-	7	7	-
충북	5	5	-	4	4	-	2	2	-

충남	6	6	-	6	6	-	4	4	-
전북	8	8	-	7	7	-	2	2	-
전남	7	7	-	5	5	-	4	4	-
경북	3	3	-	2	2	-	2	2	-
경남	-	-	-	-	-	-	-	-	-
제주	1	1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족발슈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4	24	6	20	5	52
2022	52	2	15	-	-	39
2023	39	4	15	2	-	26

6 [족발슈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족발슈퍼]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사업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당사	제이케이 컴퍼니	닭발슈퍼	20211807	외식업 (기타외식)	2024년 사업예정으로 해당 없음		
		치킨슈퍼	20210983	외식업 (치킨)	2024년 사업예정으로 해당 없음		
		잇빠잇토픽	20210441	외식업 (피자)	2022년 사업개시 로 해당 없음	9/-	-/-
배우자	정명섭/ 이지에프코리아 (EGFCOREA)	덮밥슈퍼	20191261	외식업 (기타외식)	39/-	49/-	45/-
		국밥슈퍼	20211876	외식업 (한식)	2024년 사업예정으로 해당 없음		
		소곰커피	20211878	외식업 (커피)	2024년 사업예정으로 해당 없음		
		할죽슈퍼	20213535	외식업 (한식)	2022년 사업개시 로 해당 없음	29/-	31/-
		까뿌족	20211877	외식업	2022년	15/-	25/-

				(기타외식)	사업개시로 해당 없음		
		PF족발	20214468	외식업 (한식)	2024년 사업예정으로 해당 없음		

* 상기 잇빠잇토픽은 2024년 5월, 할피족으로부터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PF족발은 2024년 4월, 이지예프코리아(EGFCOREA)가 (주)피에프컴퍼니로부터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의 [족발슈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간 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3년 가맹점수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 미포함)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상한		연간 평균 하한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6	86,527	4,028	225,242	9,212	6,416	534	23
서울	1	해당없음(5개 미만)						1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3	해당없음(5개 미만)						1
강원	7	102,996	4.838	162,551	9,212	64,104	2,728	7
충북	2	해당없음(5개 미만)						1
충남	4	해당없음(5개 미만)						4
전북	2	해당없음(5개 미만)						2
전남	4	해당없음(5개 미만)						4
경북	2	해당없음(5개 미만)						2
경남	-	-	-	-	-	-	-	-
제주	1	해당없음(5개 미만)						1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류를 기초로 역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23년도에 영업 활동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

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율, 시공 매뉴얼 준수 정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족발슈퍼]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26	98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족발슈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당사의 2023년 광고비·판촉비 사용 내역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족발슈퍼]와 관련한 광고비·판촉비 사용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내역	내용	지출금액(단위:원, VAT 미포함)	비고
광고선전비	 (비공개)	1,139,928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관리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평택우체국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3	031-8053-3121

-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 즉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인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예치방법은 당사의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귀하는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족발슈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임대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구분	금액	부가세	합계	지급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300	30	330	가맹계약 체결 시 (예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교육비	200	20	220		교육완료 시
판촉비	60	6	66		판촉물품 제작 진행시
합계	560	56	616		

- 상기 최초가맹금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일정 금액 공제 후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계약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비의 반환조건은 영업개시 전 계약해지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당사자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교육비의 반환조건은 교육시행 전 계약해지 시, 판촉비의 반환조건은 자석전단지, 배너세트 등 판촉물품 제작 진행 전 계약해지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그 반환 범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2) 보증금

-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지급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구분		금액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비	33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	
	판촉비	66	
합계		616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기타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p13-14/p20-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합계 (㉑ + ㉒)	금액(㉑)	부가세(㉒)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및 반환조건
실내 인테리어	2,475	2,250	225	165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상호협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 는 경우 반품 불가 * 가맹계약서 제10조 및 제11조 참조 요 망
간판	220	200	20	-	
주방기물 (설비)	660	600	60	-	
주방집기	330	300	30	-	
POS	121	110	11	-	

초도물품	396	360	36	-	
총계	4,202	<비고> 1) 지급대상 : 지정업체 2) 기준 : 49.5㎡ (15평)			

- 당사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물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실내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며 귀하는 그에 따른 별도의 영업지도 비용(3.3㎡ 당 55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당사가 정한 규격에 따라 영업설비·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개점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불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비용을 지급 후 귀하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시 반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1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포함)	(1)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이하 같음)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 개설지역을 결정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지역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가맹점 개설지역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 개설지역을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미성년자 불가	
종업원		

-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족발슈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분할납부

- 당사는 가맹금 납부에 있어 분할납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광고 및 판촉 분담금

(단위: %)

유형	분담비율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여부
	당사	가맹점사업자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	-	없음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	50%	50% 중 가맹점수에 따라 균등부담 (1/가맹점사업자수)	가맹본부	정산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실행 후 반환 되지 않음
브랜드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 혼합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	없음	100%	-	-	없음

② 교육·훈련비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여부	비고
가맹본부	실비	교육·훈련 실시 전	교육·훈련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신메뉴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 요청 시 등

③ 점포환경개선분담금

(단위: %)

유형	분담비율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여부
	본부	가맹점사업자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실내건축공사비용 및 간판교체비용의 20/100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름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비용 및 간판교체비용의 40/100				

④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여부	비고
가맹본부 또는 업체미지정	협의	당사의 사전고지(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전)가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진행		가맹사업의 활성화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대응 등 공동의 이익증진 필요 시

⑤ 영업설비·기기 등 유지·보수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여부	비고
해당업체	실비	해당 계약	가맹점사업자 실비처리	-

⑥ POS 사용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여부	비고
해당업체	계약 금액	해당 계약	가맹점사업자 실비처리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함)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
니다.

금액구분(기준 : 2023년)	내용(단위 : 천원)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 상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물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의 차액가맹금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하여 매뉴얼(오프닝 매뉴얼, 운영 매뉴얼, 화재 대응 매뉴얼) 준수 결과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월1회(매월 10일) 매출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족발슈퍼]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교육비, 판촉비를 지급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본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조치의무를 완료하기까지 일(日)당 일금 일십만원의 배상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족발슈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첨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족발슈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수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족발슈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족발슈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메뉴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메뉴(제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오리지날족발	(1)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 또한 당사의 허락 없이 메뉴의 조리 레시피를 변경하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할 수 없음
바베크족발	
마늘족발	
불족발	
오리지날보쌈	
바베크보쌈	위반시 책임
냉채족발	위약벌 지급
족뱅이무침	
미니족	
미니불족	
비고	다른 메뉴 판매 시 승인 필요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제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에 대해 공급받은 물품을 가맹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허락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대상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및 제3자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 물품, 설비 등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금지	□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제품명 및 권장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오리지날족발 /27,000	바베큐족발 /28,000	마늘족발 /28,000	불족발 /28,000	서면 (이메일, Fax포함)	○귀하는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오리지날보쌈 /27,000	바베큐보쌈 /28,000	냉채족발 /28,000	족뱅이무침 /35,000		
미니족 /25,000	미니불족 /25,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족발슈퍼」와 동일한 족발 메뉴를 제공하는 업종	족발슈퍼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2km(반경 1k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지도 표시

- 한편, 특수공간(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관공서, 학교, 기업, 병원, 터미널, 역사 등)은 위 설정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방법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재조정 사유 발생 ②당사 담당팀 검토 ③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④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⑤가맹점사업자 동의 ⑥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족발슈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족발슈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가 자신의 가맹점을 특수공간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특수공간 입점계약에 따른 MD개편, 퇴점, 투자비 회수 등은 귀하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족발슈퍼〕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귀하는 당사에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그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당사가 상기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서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 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7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물품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한 경우	
○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 조문
○ 가맹본부가 파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제27조 제3항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 조문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공급업체가 약정한 원·부재료, 물품 등의 공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제4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비고
①계약 수정 사유 발생 ②당사 담당팀 검토 ③수정계약서(안) 작성 ④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⑤가맹점사업자 동의 ⑥수정 완료	①수정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 ②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일 60일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가맹본부의 승인 ○ 양수인의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의 준수 ○ 양수인의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 양수인의 행정적 소요실비, 교육비 등 지급	①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영업양도 승인신청 ②당사검토(양수인 면담·양수조건 확인 등) ③승인여부통지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⑤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양도인의 협조 필요

-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인이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타 양수인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당사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게 하거나 담보 설정, 동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귀하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족발슈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족발슈퍼」와 동일한 영업방법(영업노하우 포함)과 족발 메뉴 업종	①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승인 신청 ②당사 검토 ③허가여부 통지 ④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족발슈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영업시간단축 여부
오후3시부터 다음 날 새벽2시까지	월 26일 이상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휴업이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가맹점의 소재지, 상권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경우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2명 이상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근무 시 유니폼, 앞치마, 모자, 위생마스크 착용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을 점검하여 당사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귀하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및 확인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운영 매뉴얼	①담당자 가맹점 방문 또는 자료 요청 ②가맹점 방문 시 자료 제출 또는 서면제출 ③항목 점검 ④당사 및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⑤완료	필요시	본사 가맹사업팀	당사자간 감독·확인서 류 보관

- 당사는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맹점의 경영 합리화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귀하에게 운영매뉴얼을 제공하고,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상기 매뉴얼이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해 변경,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족발슈퍼〕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시,도,군,구)로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형, 분담비율, 분담절차,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릅니다.

유형	분담비율		분담절차	시행기준
	당사	가맹점사업자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①광고·판촉 계획 통지 (시행 30일전) ②가맹점의 광고·판촉참여 여부 결정 ③가맹점부담액 제시 (명세서) ④광고·판촉실행 ⑤결과보고 및 정산	전국단위·지역단위 광고·판촉 시행기준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	50%	50% 중 가맹점수에 따라 균등부담 (1/가맹점사업자수)		①광고시행기준
브랜드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 혼합				해당지역 가맹점 사업자 과반수 찬성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	없음	100%		②판촉시행기준 해당지역 가맹점 사업자 70% 찬성

- 당사는 당해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또는 판촉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귀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위의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 내역을 통보하여 드리며, 귀하는 해당 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귀하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가맹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하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경영상 또는 기술상 정보)을 가맹계약기간 중은 물론 가맹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귀하와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기존 영업표지를 폐지,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시 가맹점 사업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 5조 6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조리 레시피를 변경하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17조 9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양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24조 13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가맹점 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 30조 4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사업법, 식품위생법, 세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벌로 금 오백만원(W5,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를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일)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총 35일 내외	소용비용 [p11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개설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5	
사업 설명·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 상담실시 및 가맹사업내용 설명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34~33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 가능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 영업지역설정 - 가맹계약서 작성 및 개설 일정 수립	D-18	
가맹금지급	- 가맹금 예치	D-18	
점포실측/설계	- 점포 내외부 실측 및 설계 - 소요비용 산출	D-17	
실내외 공사착수	- 매장 설계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6	
인테리어 공사	- 내외부공사 실시 및 주방기기 등 입고·설치	D-14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초도물품입고	- 초도물품 입고	D-2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 또는 가맹점 개설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비용부담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 간판교체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부담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비용지원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경영지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의 부담으로 합니다.
- 경영지도의 범위는接客서비스, 청결서비스, 영업표지 사용방법, 제품의 표준화준수 방법, 제품제조 및 판매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상 지원

동 내역은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시기	비고
오프닝 및 운영교육	□ 회사소개 □ 사업의신고 및 허가사항 □ 인력채용 □ 브랜드관리 지침 등 □接客교육 □ 서비스마인드 □ 고객대응 □ 전화接客 □ 위생 및 청소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 물품관리 □ 가맹점 주요 설비 및 기기 운영방법	□ 매뉴얼 제공	계약 시	필수 교육
신규개점 교육	□ 운영관리, 식품관리	□ 실습교육	오픈 전	별도 비용
신메뉴 교육	□ 새로운 메뉴의 제조 등	□ 실습교육	상시	별도 비용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 위하여 신메뉴를 개발하고 해당 교육을 제공합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시행하는 부정기적 교육은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기간	비용	비고
신규개점 교육	2일	220	오픈일전까지 이수
신메뉴 교육	개별 협의	무료 (다만, 출장 교육 시 필요 실비 산정하여 청구)	신메뉴 조리교육을 이수 하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

3 교육·훈련의 주체

-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의 신규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재교육 내지 연장교육 또는 개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 내지 연장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은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는 필요 시 자신의 부담으로 당사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개점 전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을 연기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연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사는 현재〔족발슈퍼〕관련 운영하는 직영점은 없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연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연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관리부서(031-652-187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1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방기물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첨부3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1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1.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성명		연락처	(전화)
주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2. 수령의 확인

위 본인은 『제이케이컴퍼니 족발슈퍼 가맹점 계약』을 맺고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부.

20 년 월 일

수령인 본인: (인)

제공자 : 제이케이컴퍼니

담당자 (인)

제이케이컴퍼니 (직인)

※ 작성요령 및 보관 안내

①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당사는 본 확인서류(첨부서류 포함)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1.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성명		연락처	(전화)
주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2. 수령의 확인

위 본인은 『제이케이컴퍼니 족발슈퍼 가맹점 계약』을 맺고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부.

20 년 월 일

수령인 본인: (인)

제공자 : 제이케이컴퍼니

담당자 (인)

제이케이컴퍼니 (직인)

※ 작성요령 및 보관 안내

①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당사는 본 확인서류(첨부서류 포함)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첨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1. 장래 가맹점 개설 예정지 : _____

2. 인근가맹점 현황

가맹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3. 수령의 확인

위 본인은 제이케이컴퍼니가 제공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령인 본인: (인)

제공자 : 제이케이컴퍼니

담당자 (인)

제이케이컴퍼니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1. 장래 가맹점 개설 예정지 : _____

2. 인근가맹점 현황

가맹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3. 수령의 확인

위 본인은 제이케이컴퍼니가 제공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령인 본인: (인)

제공자 : 제이케이컴퍼니

담당자 (인)

제이케이컴퍼니